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14일, 윤종오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8.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8.) 상정, 축조심사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6.4.30.)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윤종오)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한 이러한 제도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이들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실질적으로 공공발주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발주와 유사한 형태로 하도급대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공 건설공사’라 함)에 적용되는 ①하도급대금 전자지급시스템의 이용(현행법 제34조제9항), ②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현행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6호), ③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여부 확인(현행법 제68조제6항) 규정을 국가기관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관련된 현행법 규정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현행법 제34조제9항은 공공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에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하도급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하고,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다음, 현행법 제35조제1항제1호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하도

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인 국가기관등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35조 제2항제6호는 공공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체결되고,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인 국가기관등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다음, 현행법 제68조의3제6항은 국가기관등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공공 건설공사와 관련한 동 규정들은 각각 1994년, 2016년, 2018년에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미지급과 이로 인한 임금 체불로부터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그리고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신설된 것으로,

이는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계약 이행을 선도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 건설공사에 비해 보다 강화된 보호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동 규정들의 적용 대상을 특수목적법인까지 확대하는 내

용으로, 국가기관등이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은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 법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공공 건설공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 ①하도급대금 전자지급시스템 이용, ②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③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여부 확인 규정을 국가기관등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 및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도개선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의무화보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내용을 반영함.